

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3호로 2017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정비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시행('17.7.13.)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외대상 정비(안 제4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에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변경

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 정비(안 제5조제4항)

- “여성위원의 비율이 3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 개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 개정·시행(17.7.13.)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을 정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제2항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 중 제3호 “ 「지
 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을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제1항제6호 주요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추가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5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 그 밖에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제2항제2호, 안 제5조제3항제4호, 안 제6조제3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연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07.13>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주요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7.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8.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